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2p 11~17줄	개념,공식-설명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매 지역단위 농협 및 수협의 해외송금업무: 각각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건당 3천불 이하, 연간 합산 미화 5만불 이내의 송금 증권사, 카드사 해외송금업무 : 건당 미화 3천불 지급 및 수령 동일인당 각각 미화 3만불의 연간지급 및 수령 [추가] 직전분기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 건당 미화 5천불, 동일인당 연간누계액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 및 수령 우체국 :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보수 해외송금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 해외직불카드의 발행 지역단위 농협 및 수협의 해외송금업무: 각각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의 업무위탁을 받아 건당 5천불 이하, 연간 합산 미화 5만불 이내의 송금 증권사, 카드사 해외송금업무 : 건당 미화 5천불 지급 및 수령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지급 및 수령 [추가] 직전분기말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 건당 미화 5천불, 동일인당 연간누계액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 및 수령 우체국 :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보수 해외송금
21p 6줄	개념,공식-설명	* 외국환은행의장은 건당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 외국환은행의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30p 16줄	문제-본문	⑤ 위 제②항 내지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 위 제②항 내지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환전영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외국통화 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30p 23줄	개념,공식-설명	⑧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⑧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32p 8~14줄	개념,공식-설명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① 건당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3p 14~18줄	개념,공식-설명	*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3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임 * 건당 3천불 초과 송금의 연간누계가 1만불을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며, 건당 3천불 초과거래는 모두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임 *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송금의 연간누계가 1만불을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며, 건당 3천불 초과거래는 모두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
35p 6줄	개념,공식-설명	③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 이내 매각 2.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 매각실적이 전혀 없어도 미화 1만불까지는 환전이 가능함	③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미화 1만불 이내 매각 2.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 매각실적이 전혀 없어도 미화 1만불까지는 환전이 가능함 [추가] 3. 외국인거주자가 1항 3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급(우체국을 통한 해외송금 가능)
37p 10줄	개념,공식-설명	①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 할 수 있다.	①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 할 수 있다. (단, 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한 후 대외송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0p 19줄	개념,공식-설명	상 계 대외결제 위해 금전의 대외송금 또는 수령에 의하지 않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장부상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다.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상 계 대외결제를 위해 금전의 대외송금 또는 수령에 의하지 않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장부상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이다.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41p 4줄	개념,공식-설명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3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2p 4~9줄	문제-본문	② 제①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내용을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가능). ④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내용을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5p 8~23줄	개념,공식-설명	1. 미화 3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3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53p 2~7줄	개념,공식-설명	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미화 3천불 이내인 경우 8.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3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9.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3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	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8.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9.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
62p 2~6줄	개념,공식-설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 등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제①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제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추가] ①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 상환기간 1년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 등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과 한국은행총재는 제①항과 ②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제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4p 5줄	개념,공식-설명	•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3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79p 21줄	개념,공식-설명	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82p 20줄	개념,공식-설명	⑤ 제①항에 규정한 보고서 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⑤ 제①항에 규정한 보고서 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누적투자금액이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0p 22줄	개념,공식-설명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최대 미화 20만불로 한한다)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계약금 송금금액 한도 없음)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96p 5줄	개념,공식-설명	2. 개인별 및 법인별 여행자가카드의 결제(미화 3천불 초과)실적(월별)	2. 개인별 및 법인별 여행자가카드의 결제(미화 5천불 초과)실적(월별)
100p 20줄	개념,공식-설명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들면, • 건당 미화 3천불 상당액 이하의 거래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들면, •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거래
101p 16~21줄	문제-본문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신고 예외사항의 영수금액이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는 거래는, •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신고 예외사항의 영수금액이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는 거래는, •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106p 번호 : 9	문제-본문	~거주자가 미화 3천불 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미화 5천불 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110p 번호 : 31	문제-본문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3천불 을 초과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 을 초과하는
111p 번호 : 34	문제-본문	연간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확인서(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을 징구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 산정 시 건당 미화 3천불 이하 거래는 모두 제외된다.	연간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확인서(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을 징구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 산정 시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거래는 모두 제외된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12p 번호 : 40	문제-보기(지문)	①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3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 ②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①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지급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5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 ②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114p 번호 : 47	문제-보기(지문)	② 건당 미화 3천불 초과하는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누계액이 미화 1만불 초과	② 건당 미화 5천불 초과하는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누계액이 미화 1만불 초과
119p 번호 : 71	문제-본문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예정금액의 ()% 이내에서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지급가능금액은 미화 ()불이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지급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예정금액의 ()% 이내에서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125p 번호 : 71	정답	내신고수리, 10, 20만, 3	내신고수리, 10, 3
147p 17~19줄	개념,공식-설명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동일자 동일인 명의로 2천만원 이상 고객주의(확인) 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 미화 1만불 이상(원화는 2천만원)을	고객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동일자 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 고객주의(확인) 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 미화 1만불 이상(원화는 1,500만원)을~
148p 1줄	문제-본문	3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 용역대가 및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가능하다(실무적으로, 연간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하인 경우는 송금신청서와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를 같은 양식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5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이나 용역대가 및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가능하다(실무적으로, 연간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하인 경우는 송금신청서와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를 같은 양식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153p 3~13줄	개념,공식-설명	• 건당 3천불 초과 지급등으로서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신고예외사항 수령 •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지급등으로서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신고예외사항 수령 •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해외예금 송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 하는 경우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99p 9줄	개념,공식-설명	외화송금 등의 단발성 거래의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가져왔다든가 불법자금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각각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2천만원 상당액 이상인데도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고, 불법자금 거래로 의심할만한 주관적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다.	외화송금 등의 단발성 거래의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가져왔다든가 불법자금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각각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1천만원 상당액 이상인데도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고, 불법자금 거래로 의심할만한 주관적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다.
206p 번호 : 11	문제-본문	미화 3천불 이하 환전의 경우와 같은 소액거래 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	미화 5천불 이하 환전의 경우와 같은 소액거래 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
208p 번호 : 21	문제-본문	고객주의(확인) 의무(CDD)는 미화 () 이상(원화는 2천만원)을	고객주의(확인) 의무(CDD)는 미화 () 이상(원화는 1,500만원)을
336p 번호 : 14	문제-보기(지문)	② 건당 미화 3천달러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② 건당 미화 5천달러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